

청주지방법원 2022. 3. 11 선고 2021가단813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C 도로 125㎡ 중 1/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1. 7. 8. 접수 제8596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초한, 등기말소 청구

○ 원고는 피고에게 2021. 7. 7. 주문 기재 부동산 지분을 대금 330만 원에 매도하고, 2021. 7. 8. 주문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○ 피고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, 원고는 피고에게 ‘2021. 12. 7.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며 아울러 위 기간까지 이행이 없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’이라고 통지하였다.

○ 위 기간의 경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현룡